



#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Sep. 2018 발간년월 2018년 09월(통권 제11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원장  
Vol. 11 감리 황진희 본부장 자료문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홈페이지 www.kmi.re.kr

## 금주 Contents - 해사정책 이슈

### 위험화물 운송선박, 화재 및 화물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필요

#### 저인화점 연료유를 사용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IGF<sup>1)</sup> 코드의 개정

■ IMO 위험물, 고체화물, 컨테이너 전문위원회(CCC, 2018.9.10~9.14)는 IGF 코드의 개정안과 저인화점 연료유 사용에 대한 지침서를 개정하였음<sup>a)</sup>

- 연료전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IGF 코드의 개정과 메틸/에틸 알코올을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기술조항을 마련하여 선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저인화점 연료유에 대한 기준과 연료전지에 대한 IGF 코드 개정(안)이 2018년 12월에 개최되는 제100차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채택될 예정임
- IGF 코드의 개정사항은 연료전지, 연료전지 전원시스템, 전원시스템의 설계기준 등에 관한 정의 및 적용기준을 포함하고 있음

■ LNG 추진선박과 같이 가스 및 저인화점 연료유를 사용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IGF 코드는 IMO 안전 및 환경협약과 관련된 사항들을 인용 또는 포함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IGF 코드에 포함된 새로운 대체연료를 선박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 코드에 적합한 훈련요건에 따라 교육받은 선원을 탑승시켜야 함
- 가스연료와 저인화점 연료유의 경우, 적절한 안전관리와 고도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며 IGF 코드에 따라 선박, 선원 및 환경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요구됨
- LNG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저인화점 연료유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IGF 코드는 기계, 장비 및 시스템 모니터링, 제어, 설치 및 배치에 대한 강제규정을 포함함

1) IGF(Safety for ships Using Gases or Other Low-Flash point Fuels) 코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IGC (International Gas Carrier) 코드에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저인화점 연료유를 사용하는 선박의 기계, 설치, 제어 및 모니터링, 장비 및 시스템 등을 국제 표준화하여 선박 및 선원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음

- 화물탱크의 환기 및 환기시스템의 성능요건은 해상안전인명협약(SOLAS)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I(기름오염)의 제12규칙(슬러지 탱크)에는 배출연결구 및 배관 설치요건이 규정되어 있음
-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STCW 협약은 선장, 사관 및 기타 선원들의 훈련과 운항관리능력 보유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을 담고 있음

## 위험화물 보크사이트(Bauxite)를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새로운 경고<sup>b)</sup>

■ 벌크선을 통한 보크사이트 운송은 잠재적인 선박복원성 문제로 인해 선박의 전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2015년 보크사이트를 운송하던 벌크선이 18명의 선원과 함께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함
- 사고원인은 작은 입자가 많아 화물에 과도한 수분이 존재할 경우 동적 분리현상을 일으켜 물과 미세 고형물이 고형물질 위에 형성되는 보크사이트의 특성에 있음
- 액체 슬로싱에 의한 자유표면효과는 선박의 안전성에 크게 영향을 미쳐 선박이 전복될 위험이 있음
- 보크사이트 화물운송 관계자는 새로운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고 안전 운송지침을 선주, 선박운영자, 용선계약자 및 기타 모든 관련 기관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위험화물을 운반하는 컨테이너선의 잦은 화재사고<sup>c)</sup>로 특별조치 필요

■ 미등록된 위험화물로 인한 컨테이너선 화재사고도 평균 60일마다 발생하고 있음

- 위험화물의 식별, 선언 및 취급, 위험물 컨테이너로의 운송, 컨테이너 무게 계측 및 패킹 등에 대한 문제 발생은 선박의 화재사고로 이어지고 있음
- 정부의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대항기관 및 인증심사원, 해운회사를 대상으로 위험물 취급에 관한 전문교육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 과거 12개월 동안 다양한 컨테이너 사고가 있었으며 3월에 머스크 Honam호 화재와 머스크 Kensington호 화재는 부적절한 위험물 취급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미등록된 위험화물의 취급 및 선박운송을 위한 IMO의 통일된 가이드라인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며, 관행적으로 운송하던 화물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와 화물의 특성을 고려한 지침서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개정된 IGF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과 위험화물 특별취급지침 마련 필요

■ 정부는 위험화물과 관련하여 개정된 IGF 코드를 반영하여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산업계는 미등록된 위험화물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매뉴얼과 특별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함

- IGF 코드를 반영한 특수화물운송규칙, 특히, LNG 추진선박에 적용되는 규정, 연료전지와 같은 대체연료 선박사용에 필요한 관련 규정 제·개정이 필요함
- 산업계에서 위험화물을 관례적으로 취급하던 것을 절차화하고 규정화하여 보다 안전하게 위험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위험화물 정보(물질안전보건자료,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제공과 화물특성에 대한 선원 등 취급자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함

박한선 부연구위원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hspark@kmi.re.kr / 051-797-4627)

### 참고자료

- a) <http://www.imo.org/en/MediaCentre/WhatsNew/Pages/default.aspx> (2018.09.17. 검색)
- b) <http://www.imo.org/en/MediaCentre/PressBriefings/Pages/22-bauxite-CCC.aspx>  
(2018.09.16. 검색)
- c) <https://gcaptain.com/tt-club-says-still-more-needs-to-be-done-to-ensure-container-safety/>  
(2018.09.10. 검색)